



고용노동부
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자"

## 고용노동부

한국세무사회	결	<i>[Redacted]</i>
접수일시 접수번호	2020-09-01 1205	<i>[Redacted]</i>
주무과	<i>[Redacted]</i>	<i>[Redacted]</i>
담당자	<i>[Redacted]</i>	<i>[Redacted]</i>

수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대표 귀하  
(경유)

제목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

---

1. 고용노동행정의 발전을 위한 귀 사업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.8.28.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또한,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.
  -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[ei.go.kr](http://ei.go.kr)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[total.kconwel.or.kr](http://total.kconwel.or.kr)), 국민연금 EDI([edi.nps.or.kr](http://edi.nps.or.kr)), 건강보험EDI([edi.nhis.or.kr](http://edi.nhis.or.kr))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
<이직확인서,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 불가>
4. 한편,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- 특히,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(☎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콜센터(☎1588-0075) 끝.

